1-25	(가칭)기업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	(2) 고용부 장관

□ **권고 내용**

○ 법무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환경부장관은 **기업 인권 강화**를 위해 **(가칭)기업 인권경영보고서를 제도화**하고,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ESG평가지표에 제품안전 외에 소비자안전·공급망실사·인권실사(피해구제 포함) 등을 반영하기 바랍니다.

□ **이행 현황**

○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노동자 등 **국민의 알권리를 보장**하고, 기업의 **안전보건관리 의무를 강화**하기 위해,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을 통해 **'안전보건공시제'를 도입·시행** ('26.8.1~, '27.4.30. 최초 공시 예정)(고용노동부)

* ▲**(공시항목)** 안전보건관리체제, 산업재해 발생현황(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사고로 발생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 현황 포함),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,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,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과 이행계획 등
▲**(공시주체)** <민간>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, 연간 공사금액 1,200억원 이상 건설사 등, <공공> 공공기관, 지방공사·공단

□ **향후 계획**

○ 안전보건공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('26.11월 시범 오픈, ~'27.1월 정식 오픈) 및 공시 가이드 마련·제도 홍보(연내)(고용노동부)

○ 기업 인권경영보고서 제도화 논의 시 관련 국제규범, 노동안전,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이 다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(전부처)